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9.20.)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광용]

목 차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3
2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	12
3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
4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8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9. 11

나. 제출자 : 이성복, 조선제, 류영수, 백범영

다. 회부일자 : 2012. 09. 11

2.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1. 10. 17) 사항을 반영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3. 주요골자

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3조)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의거 집행기관의 범위에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포함
- 정보공개조례 적용범위 신설 : 출자·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

나. 정보공개책임관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은 민원봉사과장으로 정함
- 정보공개책임관 역할 규정

다. 정보공개수수료 감면기준을 규정(안 제6조)

- 감면대상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준용
- 감면비율 : 100분의 50
- 감면조건 : 소명자료 첨부 要

라.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을 정함(안 제7조, 별표)

- 공표대상 : 92개 항목
- 반영방법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반영
 - ▶ 그 밖의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표대상에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거창군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정보공개전담 창구를 지정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 따라 처리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행정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법시행령에 따르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비영리 학술용 등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정보의 대상, 공개범위, 주기, 시기 등) 군민에게 공표(92개 항목)하고,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보 또는 거창군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는 등의 정보의 공표방법을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 주기 및 시기,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공표기관 및 부서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필요시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심의회는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위촉직 4명(외부전문가 3명, 군의원1)과 당연직 3명(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안 제12조**에서는 심의회는 심의회의 기능으로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제출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등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7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안 19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

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9. 11

나. 제출자 : 김재권, 안철우, 강철우, 이애숙

다. 회부일자 : 2012. 09. 11

2. 제안이유

- 현재 군에서 수많은 용역이 수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 유사 또는 중복 불필요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어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기능이 전혀 없고 무분별한 용역 수행으로 인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 수행 전 사전 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3. 주요골자

가. 각종 용역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용역심의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둠(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창조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1명과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함.

다.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용역기간의 적합성, 용역과업지시서의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 및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함.

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시함(안 제7조)

-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과 사업집행 용역으로 하되, 평가·자문·지도 및 사업관리 업무는 1건당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고,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하는 규정을 정함

마.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둠(안 제10조)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 대상과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할 때는 제척 및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바. 용역과제 심의요청 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

-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할 의안의 제안 이유와 사업 필요성 등을 용역과제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용역결과 관리 규정을 둠(안 제14조)

-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현재 군에서 많은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나 마땅한 통제기능이 없는 실정에 있어 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역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은 위촉직 5명이상(군의원1, 용역분야 전문종사자4명 이상) 과 당연직 5명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창조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고군의원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기 및 직위 재직기간으로 규정함

- **안 제5조**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용역심의 대상으로
 - 학술용역 및 평가안전진단 시험 등 용역과 사업집행 용역 : 2천만원 이상
 - 평가·자문·지도 및 사업관리 업무 : 1건당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 다음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
 -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은 사업.
 - 국고 및 도비 보조 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척·회피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결과조치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14조**에서는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도록 규정을 함
-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09. 11

2. 제안이유

-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 기존의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안 별표 1)
- 나.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 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군수가 직접 수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련시설 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함

라. 수련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 수련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련시설별 사용료 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함
-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음

마.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400백만원 정도(2013년도 예산 확보 예정)

-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7.05. ~ 2012.07.24)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을 신규로 건립함에 따라 기존의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과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별표1)를 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사업 등 수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시설의 장을 두며, 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 **안 제9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련시설별 사용료 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함
- **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사용자는 수련시설의 기본시설물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으며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도록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는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고 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 **안 제16조**에서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위한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2011.5.1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참고로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사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7421호, ‘05. 3. 24)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09. 11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등을 심의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의원, 교육공무원, 교장, 교원, 경찰공무원 등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비밀준수 의무를 정함(안 제12조)
-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 제1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7.12 ~ 2012.08.01)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교육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청소년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고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법률에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등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뒤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 제15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